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제4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한다”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 를 “10분의 2이하”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 예탁 조항 삭제(안 제3조)

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7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1. ~ 10.11.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5”를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2년 12월 31일</u>----- ----- ----- ----- -----.</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④ <u>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u></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 ----- -----.</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한다.</u> ----- -----.</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② (생략)</p>	<p>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p>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
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

③-----

-----.
----- 2 -----

-----.